

인 천 지 방 법 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509906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2. 2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박인진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3. 7. 19. 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9. 11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외국인등록(체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김사빛	전부	등기사항 전부증명서	주거 임차권자	2021. 6. 25.~	105,000,000		2021. 6. 28.	2021. 5. 26.		
주택도시보증공사 (임차인 김사빛)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1. 6. 25.~ 2023. 11. 23.	105,000,000		2021. 6. 28.	2021. 5. 26.	2025. 9. 8.	
<비고> - 김사빛 :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. 8. 1.임 - 주택도시보증공사(임차인 김사빛) : 경매신청권자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의 기관으로 임차인 김사빛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.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약약을 체결함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(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약약서가 제출됨)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장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509906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66-10

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106번길 9-7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6층 공동주택,업무시설

1층 12.15㎡

2층 114.56㎡

3층 114.56㎡

4층 114.56㎡

5층 102.84㎡

6층 31.74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3층301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36.03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의동 66-10

대 172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172분의 16.43

감정평가액

94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6.03.12

94,000,000

9,400,000

2회

2026.04.14

65,800,000

6,580,000

3회

2026.05.15

46,060,000

4,606,000

4회

2026.06.23

32,242,000

3,224,200